

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## 2. 주요내용

- 대구도시공사 임원의 정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).
-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항을 삭제함(안 제35조).

## 3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
  - ▶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.)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▶ 안 제9조에서는 법 제58조제1항<sup>16)</sup>과 달리 ‘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’을 두는 것으로 공사 임원 정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됨에 따라 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.
- ▶ 안 제35조에서는 법 제82조<sup>17)</sup>의 개정(2015.12.15.)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▶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음.

## 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공사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<sup>18)</sup>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**16)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**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**17) 제82조(과태료)**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**18) 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▶ 그러나, 공사를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은 없었으며, 향후에는 상위법의 제·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  
-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## 2. 주요내용

- 대구시설공단 임원의 정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함(안 제7조제1항).
-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항을 삭제함(안 제32조).

## 3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
  - ▶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.)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▶ 안 제7조에서는 법 제58조제1항<sup>19)</sup>과 달리 ‘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’을 두는 것으로 공단 임원 정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됨에 따라 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.
- ▶ 안 제32조에서는 법 제82조<sup>20)</sup>의 개정(2015.12.15.)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▶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음.

## 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공단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<sup>21)</sup>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19)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20) 제8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21)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▶ 그러나, 공단을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은 없었으며, 향후에는 상위법의 제·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  
- 이상으로 대구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